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8496 제안연월일: 2025. 2.

<u>번호</u>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44	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6.05.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1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2	2571	김현정의원 등 17인	2024.08.05.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3	4381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4.09.26.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4	4474	유동수의원 등 10인	2024.09.30.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5	4515	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10.02.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6	5387	이언주의원 등 10인	2024.11.0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457	박주민의원 등 11인	2024.06.13.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7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687	강훈식의원 등 12인	2024.06.20.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8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1063	정부	2024.06.27.	상정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09.23.)
9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10	2847	박상혁의원 등 11인	2024.08.1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1	3608	박상혁의원 등 15인	2024.09.0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4475	김남근의원 등 29인	2024.09.30.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12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4700	박균택의원 등 11인	2024.10.15.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1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14	4732	이강일의원 등 13인	2024.10.16.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5	5704	이정문의원 등 18인	2024.11.1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1.22.)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24.)

- 가.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4.)는 위 15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1~6의 법률안 6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7~15의 법률안 9건은 대안에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 나.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2. 26.)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 나.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82조의3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 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 가-----본점소재지나 인접 集하여야 한다. 한 곳에 소집하여야----. <신 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 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 로 총회를 개최한다.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신 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 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 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 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 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 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 다.
- 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 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 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 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 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등)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 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 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 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 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 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 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 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